

2026년 거제맥주축제 행사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거제맥주축제 행사 대행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5.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년 거제맥주축제 행사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행사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

※ 행사일 : 2026. 8. 28.(금) ~ 29.(토), 18:00~22:00 [2일간]

다. 기초금액: 금92,600,000원(VAT, 대행료 등 제비용 일체 포함)

라. 용역내용: 행사 종합 기획 및 운영(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장 소: 거제시 장승포 수변공원

※ 주최 측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축제기획대행서비스(90151890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제3자에게 일괄 (재)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4. 15.(수) ~ 2026. 4. 27.(월)

나. 제안서 접수

- 접수 일: 2026. 4. 28.(화), 14:00 ~ 16:00

※ 제안서 접수일 평가위원 추천

- 접수장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축제부(055-639-8193)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 공공청사 5층 502호 문화축제부)

-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사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하며,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다. 사업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로 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처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 발표

- 일 시: 2026. 4. 30.(목), 14:00 예정 (추후 개별 통보)
 - ※ 참가하는 업체에서는 평가위원회 발표자료(PPT등)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라며, 제안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장 소: 거제시 공공청사 6층 회의실
 -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서 참조

- 발표방법: 업체별 공개 프리젠테이션 발표
 - ※ 발표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파워포인트(동영상 포함)로 작성
(그 외 다른 방식으로 프리젠테이션 자료 준비 가능)
 - ※ 발표자는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및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시간: 35분(15분 이내 설명 / 20분 질의응답)
- 참여인원: 2명 이내(제안업체 책임자 1명, 보조자 1명)
 - ※ 사업 책임자가 발표 및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야 함
- 준비물: 입찰참가자는 발표할 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지참, 추가자료 배포 금지(프로젝터는 필요치 않으나, 노트북의 경우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 등을 대비하여 자체 노트북 구비)

나. 평가 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7. 평가 및 협상 절차

- 가.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평가
- 나.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 협상적격자(70점 이상자)가 없거나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 점수 중 정성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한다.(정성적 점수가 동일할 경우 정량적 점수 순으로 한다)
- 라. 최고점수 획득 업체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한다.
-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8. 계약체결

-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 조건, 특수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나.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함
-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팀(055-639-8112~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계약에 관한 기타사항 및 일반적인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다. 계약 건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귀속됨
- 라. 제안서와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마. 심사위원회와 응모 업체와는 어떠한 형태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 바.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는 실격처리 됨
- 사. 선정된 이후라도 공모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거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승낙 없이 제안신청서와 달리 운용한다든지, 기타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점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 당선 내용에 대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필요시 일부 수정, 추가, 보완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자. 제안서 작성 시 업체명칭과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문구나 기호 숫자 등을 표시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차. 제안서 작성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고,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함

카. 국가전체 또는 행사지역의 천재지변과 감염병[법정감염병 1급~4급을 포함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신종 및 해외유행감염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이유로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된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지시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 또는 1순위 사업자는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며, 계약취소 당일까지 기 소요된 비용을 증빙서류와 제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산 처리함

타. 기타 문의처

- 과업 및 평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축제부(055-639-8193)
- 공고 및 계약: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회계부(055-639-810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